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21호 2023. 2. 9.(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12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39호 사천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4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3-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 6
- 사천시 고시 제2023-1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 7
- 사천시 고시 제2023-17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고시 ----- 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3-18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2
- 사천시 공고 제2023-218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23
- 사천시 공고 제2023-219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0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규칙 제81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생활장학금: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이 필요한 사람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학군에 따른 중학생 및 꿈 드림 장학생은 예외로 하며, 꿈 드림 장학생 보호자의 주소지는 사천시이어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 급 기 준	비고																		
관 내 고 교 입 학 생	<p>■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단,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 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간주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50%;">5% 이내</td> <td style="width: 50%;">5% 초과 ~ 10% 이내</td> </tr> <tr>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able> <p>■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단,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의하여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p> <p>■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p> <p>■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p>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300만원	200만원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300만원	200만원																			
한국폴리텍대 항공캠퍼스 장 학 생	<p>■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관 외 대 학 (교) 입 학 생	<p>■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r> <td style="width: 33%;">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td> <td style="width: 33%;">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td> <td style="width: 33%;">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td> </tr> <tr> <td>200만원</td> <td>100만원</td> <td>5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예술,체육 기타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	<p>■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과 단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tr> <th colspan="3">개인 종목</th> <th colspan="3">단체 종목</th> </tr> <tr> <td style="width: 16.6%;">1위</td> <td style="width: 16.6%;">2위</td> <td style="width: 16.6%;">3위</td> <td style="width: 16.6%;">1위</td> <td style="width: 16.6%;">2위</td> <td style="width: 16.6%;">3위</td> </tr> <tr> <td>50만원</td> <td>30만원</td> <td>2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d>100만원</td> </tr> </table> <p>※ 단체가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의 해당 순위 금액 x 인원수로 지급 ※ 전국대회가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결정은 대회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함(연 1회에 한하여 지급)</p>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구분	지 급 기 준	비고											
<p>성적 향상 학생</p>	<p>■ 해당 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성적 10% 이상 향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389 387 1024 483"> <tr> <td>20%이상</td> <td>10%이상~20%미만</td> </tr> <tr> <td>50만원</td> <td>20만원</td> </tr> </table> <p>▶ 전 과목(또는 국·영·수) 평균 또는 석차 비교 ▶ 학년 또는 학기 비교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p>	20%이상	10%이상~20%미만	50만원	20만원								
20%이상	10%이상~20%미만												
50만원	20만원												
<p>꿈 드림 장 학생</p>	<p>■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로서</p> <p>▶ 신입생은 수능성적 4등급 이내가 2개 영역 이상인 자 또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p> <p>▶ 재학생은 직전 2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내의 학교에 한정함</p> <table border="1" data-bbox="389 1249 1350 1415"> <thead> <tr> <th>구분</th> <th>선정기준</th> <th>선정인원</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신입생</td> <td rowspan="2">성적+소득</td> <td>10명</td> <td>100만원</td> </tr> <tr> <td>재학생</td> <td>30명</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타 지급 유형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p> <p>▶ 선발인원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복학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선발공고 시 별도 명시함</p>	구분	선정기준	선정인원	지급액	신입생	성적+소득	10명	100만원	재학생	30명	100만원	
구분	선정기준	선정인원	지급액										
신입생	성적+소득	10명	100만원										
재학생		30명	100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훈령 제439호

사천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의 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시의 소관사무, 행정, 법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고시 제2023-1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3. 2. 9.

사 천 시 장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1 (2023.1.30.)	신수도 부잔교 및 도교 설치	사천시 신수동 14번지선	계: 1,144.8 - 직접: 143.8 - 간접: 1,001	2023. 1. 31.~ 2038. 1. 30.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건설과장)	기간연장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고시 제2023-1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따라 정비사업의 완료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된 급경사지에 대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내용

지역명	위 치	면적(m ²)	재해위험도 등급		해제사유	비고 (지정일)
			정비 전	정비 후		
노산공원2	경상남도 사천시 서금동 100-2번지 일원	1,503	D	B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소 해소	'16. 12. 2.

2. 문의처 : 사천시청 재난안전과(☎055-831-3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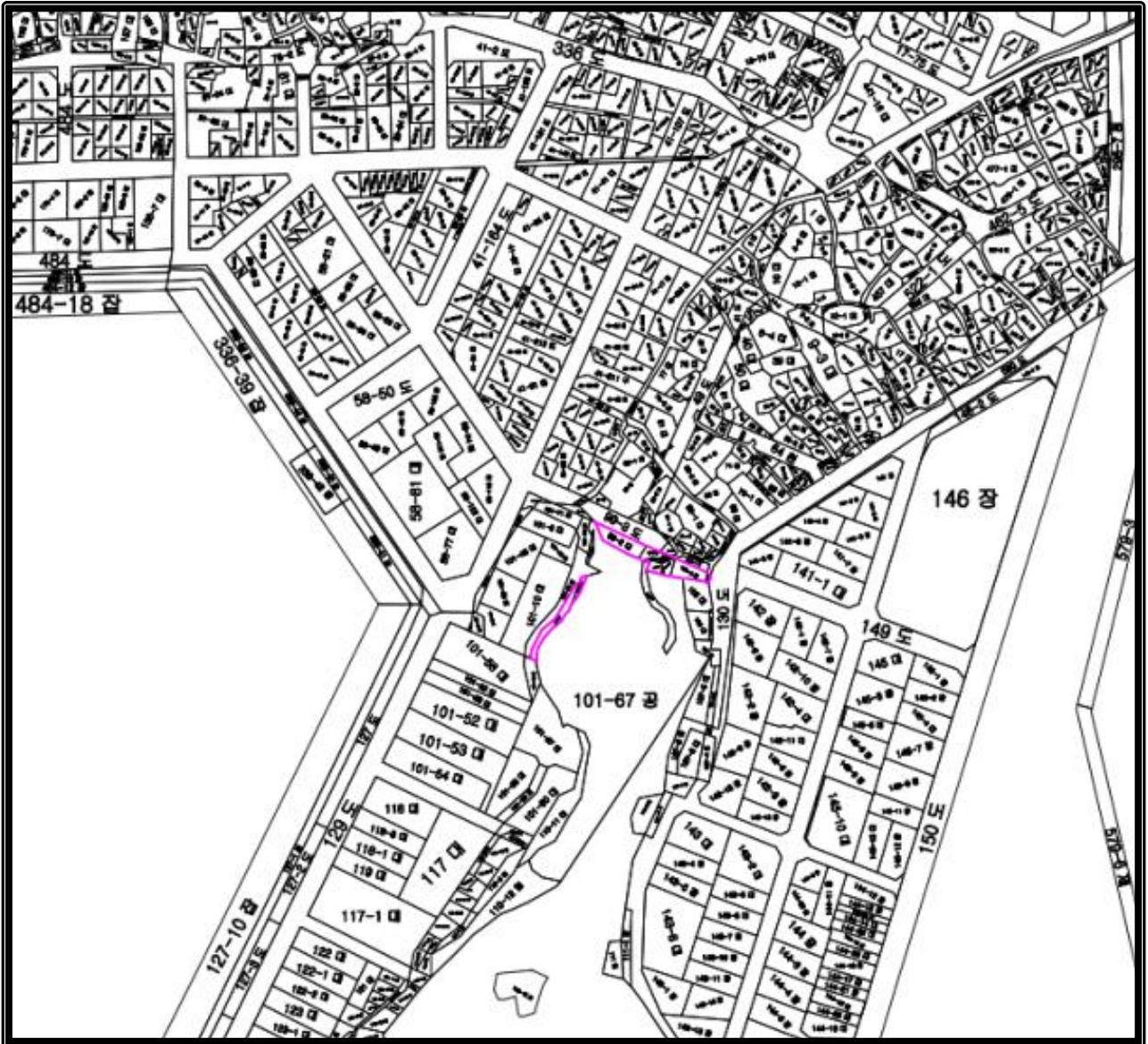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도면(노산공원2)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고시 제2023-17호

사천시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시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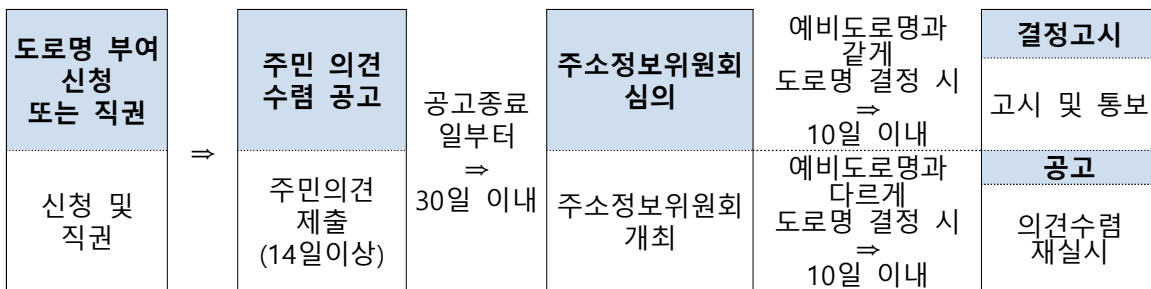
2023. 2. 9.

사 천 시 장

1. 고시일 : 2023. 2. 9.
2. 고시방법 : 관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6건

※ 별첨조서 참조

4.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변경 절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831-28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조서 및 위치도 1부.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 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1	개발등길	동금동 248-10	동금동 199-8	도면참조	191	8	길	10	1/40	옛 지명으로 부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의결 2022.12.22. 동금9길→'개발등길' 수정가결)	동서금동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 조사 및 현황도

연번	예비도로명	도로구간		중심선	길이(m)	폭(m)	위계	기초간격(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관할구역
		시작지점	끝지점								
2	유통단지로	축동면 사다리 278-5	축동면 사다리 35-27	도면참조	930	23	로	20	1/92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	축동면
3	유통단지1길	축동면 사다리 278-14	축동면 사다리 19-11	도면참조	456	15	길	20	1/44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	축동면
4	유통단지2길	축동면 사다리 산 16-1	축동면 사다리 산 16-23	도면참조	165	15	길	20	1/16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	축동면
5	유통단지3길	축동면 사다리 88-9	축동면 사다리 106-1	도면참조	350	15	길	20	1/34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	축동면
6	유통단지4길	축동면 사다리 89-1	축동면 사다리 116-1	도면참조	383	15	길	20	1/38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 조성사업 부지	축동면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공고 제2023-18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목적 규정 변경(안 제1조)

다. 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 신설(안 제4조)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8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행정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급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명 변경

-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나. 제명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목적 규정을 변경함(안 제1조)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다. 수당 신설(안 제4조, 별표 3)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14

나. 예산조치: 3,600천원(2023년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함께 1차 추경시 요구)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 ~ 2023.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을 “에 따라 사천시 소속”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표 3]<신설 2023. . >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지 급 대 상	지 급 액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사천시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0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사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u></p> <p>제1조(목적) ----- -----에 따라 사 <u>천시 소속</u> ----- -----.</p> <p>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 <u>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 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 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 비 가산금은 별표 3과 같다.</u></p>

관 련 법 규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개정 2023. 1. 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교육연구원(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교육연구원(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군·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원(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학과장(학장보), 장학관·교육연구원(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 · 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18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180,000원
8·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75,000원

비고

-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거나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 파견된 공무원
 - 1) 4급·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 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	200,000원

	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원(1· 2·3급 상당 직위)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 무원(4·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6급 상 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원(4· 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 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공고 제2023-218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건립에 따른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2. 주요내용

가. 사용료 부과 시설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에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추가

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0조제1항, 제20조의2)

- 이용권,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24,
FAX : 831-6013)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문화체육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추가(안 제10조 관련 별표 1)

나. 이용권 및 회원권 구입 체육시설에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추가

(안 제10조제1항 및 제20조의2)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9. ~ 2023. 3. 2.(20일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다) 반영여부: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로 한다.

제20조의2 중 “생활체육관”을 “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로 한다.

별표 1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원)

종목	1일 이용			월회원 (자유반)	강습반 (월회원)	비고
	구분	개인	단체			
수영장	어른	3,500	3,000	55,000	65,000	
	군인·학생	3,000	2,500	45,000	55,000	
	어린이·경로대상	2,500	2,000	35,000	45,000	
헬스	전회원	3,000	-	40,000	-	
에어로빅	전회원	-	-	-	※ 주5일: 40,000 주3일: 30,000	
생활스포츠 (댄스, 요가, 필라테스)	전회원	-	-	-	※ 주5일: 60,000 주3일: 40,000	
탁구	전회원	3,000	-	40,000		1명/ 2시간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 대관 및 부대시설 전용 사용료

(단위: 원)

구분	전용 사용료		비고
	기 준(시간)	금액	
다목적 강당	4	60,000	
음악실	4	20,000	
문화교실1	4	40,000	
문화교실2	4	20,000	
에어로빅실	4	60,000	
G.X룸	4	40,000	
냉·난방비	4	20,000	·냉난방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 - 1시간 이하: 1시간 - 1시간 초과: 2시간
앰프	4	2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u>생활체육관</u>을 이용할 때에는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p> <p>③·④ (생 략)</p> <p>제20조의2(회원권) 시장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u>생활체육관</u>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u>-----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회원권) ----- ----- <u>생활체육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u>----- -----.</p>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공고 제2023-219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실태(숲나들e포함)’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의 개정·권고가 있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당일 현장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 나.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다.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 라.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마. 감염성 질환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2항제1호)

-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0, FAX: 831-6038)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3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2022년 감사원 ‘공공업무 구축·운영실태(숲나들e포함)’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의 개정 권고가 있어 필요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당일 현장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3항)
- 나.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 다. 관리자 예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3)
- 라.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4)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마. 감염성 질환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9조제2항제1호)

-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공보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3. 2. . ~ 2023. 3.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와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6조의4(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21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
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1일	1,000	800	• 어린이: 만7세 ~ 12세 • 청소년: 만13세 ~ 18세 • 성 인: 만19세 이상 • 단체기준: 20인 이상
청소년·군인	1인1일	700	500	
어 린 이	1인1일	400	200	

이용료

시설명	구 분		이용 인원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명 칭	면 적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 집 (A형, B형)	28.92m ² (원룸형)	2인~4인	1동/1일	70,000	100,000	입장료 면제
	숲속의 집 (장애인)	30.42m ² (원룸형)					
	숲속의 집 (C형)	37.83m ² (투룸형)	4인~6인	1동/1일	90,000	120,000	
	산림휴양관	69.09m ² (복층형)	8인~10인	1동/1일	120,000	170,000	
	야영데크	16.0m ²	4인	1개소/1일	15,000	20,000	입장료 면제
	야영데크	30.0m ²	6인	1개소/1일	25,000	30,000	

기타시설 이용료: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 날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제1호서식]

자연휴양림 예약제외 시설물 및 관리대장
(제6조의2제4항 관련)

예약제외 시설물 : 산림휴양관 22호

예약제외 시설물 관리대장

시 설 명	명 칭	이용기간	사 용 자	사 유	기 타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성수기 및 주말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비수기 및 주중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해야 하며, 그 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 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신 설>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생 략)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 8. (생 략)

③·④ (생 략)

제6조의4(매매·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 8.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